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0. . . (제 회)	

고용보험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 (고용노동부장관)
제출연월일	20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고용보험법」(법률 제17429호, '20.6.9 공포, '20.12.10. 시행예정)개정
에 따라 「예술인복지법」에 따른 예술인 등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
한 사람에 대하여 고용보험을 적용하고 실업급여 및 출산전후급여등
을 보장함에 따라 예술인인 피보험자의 적용제외 소득기준, 실업급여 수
급을 위한 피보험단위기간 합산 방식 등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세부 적용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예술인의 고용보험 적용범위(안 제104조의5 제1항·제2항)

「고용보험법」(법률 제17429호, '20.6.9 공포, '20.12.10. 시행예정)개정
에 따라 「예술인복지법」에 따른 예술인 외에도 문화예술분야에서 창
작, 실연(實演),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하고 있거나 하려는 사람을 고
용보험 적용대상에 포함하고, 각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기준으로
산정한 월 평균소득이 50만원 이상인 경우를 적용 기준으로 마련하
고자 함.

나. 예술인의 피보험자격의 신고 특례범위 및 이중취득 (안 제104조의5
제6항·제7항·제8항)

다수의 또는 여러 차례의 도급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예술인의 피보험 자격 신고 의무를 발주자 또는 원수급인에게 부여하는 특례 사업의 범위를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사업으로 정하고, 예술인에 대해서는 피보험자격의 이중취득 인정방식을 마련하고자 함.

다. 예술인인 피보험자의 구직급여 수급 관련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되는 소득감소의 기준(안 제104조의6 제1항)

구직급여 수급요건인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되는 소득감소의 기준을 이직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보수가 전년도 동일기간 보다 20% 이상 감소한 경우 또는 이직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 12개월 동안 전년도 월평균보수 보다 20% 이상 감소한 달이 5개월 이상인 경우로 정함

라. 예술인인 피보험자의 구직급여 기초일액의 상한액 및 단기예술인의 피보험기간 산정기준 마련(안 제104조의6 제5항)

예술인의 구직급여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일액을 11만원으로 하고, 단기예술인의 피보험기간을 월 단위로 환산하는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마. 예술인의 출산전후휴급여 등 지급기준 등(안 제104조의7)

예술인인 피보험자가 출산 혹은 유산·사산을 이유로 노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출산전후휴급여 등의 지급요건·지급기간 등을 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의 지급기준에 준하여 마련하고자 함

바. 권한의 위임 등(안 제145조 제1항 및 제2항, 제145조의2 제1항 및 제2항)

예술인의 구직급여와 출산전후급여 등의 지급과 지급의 제한 등의 권한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고, 예술인인 피보험자의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의 수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근로복지공단에 위탁하고자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장의2(제104조의5부터 제104조의8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장의2 예술인인 피보험자에 대한 고용보험 특례

제104조의5(예술인의 적용범위 및 피보험자격신고) ① 법 제77조의2제1

항에서 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예술인복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술인
2. 「예술인복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술인이 아니면서, 문화예술 분야에서 창작, 실연(實演),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하고 있거나 하려는 사람

② 법 제77조의2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기준”이란, 제1항의 예술인(이하 “예술인”이라 한다)과 사업주가 체결한 각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기준으로 해당 소득 금액을 계약 기간으로 나눈 월(月) 금액(이하 ‘월평균소득’이라 한다)이 50만원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다만, 각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의 월평균소득은 50만원 미만이나 같은 계약기간 내에 둘 이상의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예술인이 각 계약의 월평균소득의 합산을 신청하고 합산한 금액이 50만원 이상인 경우 법 제77조의2제2항제2호의 소득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③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의 상대방인 사업주는 법 제77조의5제1항에 따라 준용하는 법 제15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그 사업과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예술인의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에 관한 사항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나 하수급인이 법 제77조의2제2항제2호단서조항에 따른 단기예술인(이하 “단기예술인”이라 한다)과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체결일이 해당하는 달에 문화예술용역 제공일수, 계약금액 등이 적힌 노무제공내용 확인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달 15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을 신고하거나 이직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④ 제104조의5제2항단서에 따라 각 계약의 월평균소득의 합산을 신청하려는 예술인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⑤ 법 제77조의5제1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예술인이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 등에 관한 사항을 신고할 때에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서 등 계약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 법 제77조의2제3항에서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문화예술용역 계약을 발주하는 사업을 말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4항에 따라 피보험자격을 신고하여야 한다.

1. 하나의 사업에 다수의 도급이 이루어져 원수급인이 다수인 경우: 발주자인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원수급인 및 하수급인과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예술인을 신고하여야 한다.
2. 하나의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으로 이루어져 하수급인이 다수인 경우: 원수급인이 하수급인과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예술인을 신고하여야 한다.

⑦ 법 제77조의2제4항에 따라 하수급인인 사업주와 예술인등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자료 및 정보를 제3항에 따라 피보험자격을 신고하는 발주자 또는 원수급인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1. 하도급계약서(발주자가 신고하는 경우만 해당)
2.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서
3. 예술인명부

⑧ 법 제77조의2제5항에 따라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둘 이상의 사업에서 동시에 근로계약 또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예술인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1. 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한다)와 예술인으로 동시에 둘 이상의 사업에서 근로계약 및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경우 각 사업에서 모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일용근로자 및 법 제77조의2제2항제2호 단서에 따른 단기예술인(이하 “단기예술인”이라 한다)의 경우도 같다.
 2. 예술인으로 둘 이상의 사업에서 동시에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각각 체결한 경우 각 사업에서 모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3. 예술인이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외에 근로자로 둘 이상의 사업에 동시에 고용되는 경우 근로자로서 취득하는 피보험자격은 법 제18조에 따른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라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보험료징수법」 제49조의2에 따른 자영업자로 피보험자격을 동시에 취득한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피보험자격만 취득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피보험자가 일용근로자 또는 단기예술인인 경우에는 해당 피보험자격과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격 중 어느 하나를 선택 할 수 있다.
- ⑨ 법 제15조제1항 및 제3항, 제17조에 따라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예술인이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던 중 다음 각 호에 따른 월평균보수의 산정 근거가 되는 소득이 제2항본문에 따른 소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도 계속하여 피보험자격을 유지한다.
1.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9조의3제3항제1호에 따라 산정한 월평균

보수

2.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9조의3제6항에 따라 변경된 월평균보수

⑩ 예술인인 피보험자의 피보험자격에 관하여는 제9조, 제10조제1항, 제1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업주 또는 하수급인”은 “사업주 또는 발주자나 원수급인”으로 한다.

제104조의6(예술인의 구직급여) ① 법 제77조의3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소득감소로 인하여 이직”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이직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보수가 전년도 동일기간 보다 20% 이상 감소한 경우 또는 이직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 12개월 동안 전년도 월평균보수 보다 20% 이상 감소한 달이 5개월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77조의3제2항에 따라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 근로자·예술인 중 둘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종사한 경우 피보험 단위기간은 법 제40조제1항제1호(이하 “근로자로서의 기여요건”이라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법 제77조의3제1항제1호(이하 “예술인으로서의 기여요건”이라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서 정하는 기준기간 중 근로자 또는 예술인으로 종사한 기간의 비율을 기준으로, 예술인으로서의 기여요건에서 부족한 피보험단위기간의 비율을 근로자의 기준기간 대비 피보험단위기간의 비율로 충족한 경우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③ 법 제77조의3제5항에 따라 구직급여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일액

이 11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1만원을 해당 임금일액으로 한다.

④ 법 제77조의3제6항 단서에 따라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는 소득감소에 따른 이직의 대기기간은 4주로 한다.

⑤ 법 제77조의3제7항에 따른 단기예술인의 피보험기간은 해당 월의 노무제공일수가 11일 이상인 경우 1개월로 간주한다. 다만, 11일 미만으로 노무를 제공한 월에 대해서는 각 월별 노무제공일수를 합산하여 22일로 나눈 기간을 피보험단위기간으로 한다.

⑥ 법 제77조의3제8항에 따라 실업인정대상 기간 중 취업 등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구직급여일액을 일부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수급자격자가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취업한 것으로 보아 취업한 기간 동안 구직급여 일액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가. 1개월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나.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다.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자 또는 법 제77조의2제2항제2호 단서에 따른 단기예술인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라. 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라 새로이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마. 상업·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 종사자를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바.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
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사. 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제1호의 취업에 해당하지 않지만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취득한 소득
이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구직급여일액에
서 초과분을 감액하고 지급한다.

⑦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예술인인 피보험자의 구직급여 지급 여부를
결정한 경우 그 청구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구직급여를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제62조에 따른 고용보험 수급자격증에
그 사실을 적어 내줌으로써 통지를 갈음할 수 있으며, 청구인의 동의
가 있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통지할 수 있다.

⑧ 예술인인 피보험자의 구직급여에 관하여는 제59조부터 제63조까
지, 제64조제1호·제2호 및 제65조부터 제67조까지, 제69조부터 제71조
까지, 제75조부터 제77조까지, 제79조부터 제8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
한다. 이 경우 “법 제40조제2항제1호”는 “법 제77조의5제2항에서 준용
하는 법 제40조제2항제1호”로, “법 제42조”는 “법 제77조의5제2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42조”로, “법 제43조제1항”은 “법 제77조의5제2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43조제1항”으로, “법 제44조”는 “법 제77조의5제2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44조”로, “법 제47조”는 “법 제77조의5제2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47조”로, “법 제48조”는 “법 제77조의5제2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48조”로, “법 제57조”는 “법 제77조의5제2항에서 준용하는 제57조”로, “법 제60조”는 “법 제77조의5제2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60조”로, “법 제61조”는 “법 제77조의5제2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61조”로, “법 제63조”는 “법 제77조의5제2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63조”로 한다.

제104조의7(예술인인 피보험자의 출산전후급여등 지급요건 등) ① 법 제77조의4제2항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은 예술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출산전후급여등(이하 “출산전후급여등”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1. 출산 또는 유산·사산을 한 날(이하 “출산일 등”이라 한다) 이전에 법 제77조의3제2항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3개월 이상 일 것
2. 출산일 등 전후로 노무제공을 하지 않았을 것. 다만, 수급기간 중 취업 또는 자영업 등을 통한 소득이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에도 지급한다.
3. 출산일 등의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유로 신청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가. 천재지변

나. 본인이나 배우자의 질병·부상

다. 본인이나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 비속의 질병·부상

라. 범죄혐의로 인한 구속이나 형의 집행

② 제1항에 따른 출산전후급여등은 다음 각 호의 기간에 대하여 출산 일 등으로부터 이전 1년간 월평균보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1. 예술인이 출산한 경우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 120일). 다만, 출산일을 포함하여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2. 예술인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간

가. 유산 또는 사산한 예술인의 임신기간(이하 “임신기간”이라 한다)이 1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

나.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다.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라.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마.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③ 제2항에 따라 지급하는 출산전후급여등의 상한액 및 하한액은 다

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가. 제101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의 상·하한액

나. 예술인의 평균 보수 수준

다. 물가상승률

라.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출산전후급여등을 받았거나 받으려 한 사람에게는 그 급여를 받은 날 또는 받으려 한 날부터의 출산전후급여등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⑤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출산전후급여등을 지급받은 사람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받은 출산전후급여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⑥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라 반환을 명하는 경우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출산전후급여등 지급액의 2배 이하의 금액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제104조의5제4항에 따라 예술인의 피보험자격을 신고하는 사업주와 공모(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사업주의 거짓된 신고·보고 또는 증명 등 사업주의 귀책사유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를 말한다)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출산전후급여등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지급받은 출산전후급여등 지급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⑦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출산전후급여등을 지급받은 예

술인이 제104조의5제4항에 따른 사업주와 공모한 경우에는 그 사업주도 그 출산전후급여등을 지급받은 사람과 연대하여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책임을 진다.

⑧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출산전후급여등의 수급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수급자격이 있었던 사람에게 잘못 지급된 출산전후급여등이 있으면 그 지급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⑨ 출산전후급여등의 반환 등에 관하여는 제81조를 준용한다. 이때 “구직급여”는 “출산전후급여등”으로 한다.

제104조의8(준용) 예술인의 구직급여·출산전후급여등에 관하여는 제121조부터 제142조까지 및 제14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87조”는 “법 제77조의5제3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87조”로, “법 제89조”는 “법 제77조의5제3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89조”로, “법 제91조”는 “법 제77조의5제3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91조”로, “법 제92조”는 “법 제77조의5제3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92조”로, “법 제93조”는 “법 제77조의5제3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93조”로, “법 제94조”는 “법 제77조의5제3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94조”로, “법 제99조”는 “법 제77조의5제3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99조”로, “법 제101조”는 “법 제77조의5제3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101조”로 한다.

제104조의5를 제104조의9로 한다.

제145조제1항에 제1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의2. 법 제77조의3과 법 제77조의5 제2항·제3항에 따른 구직급여와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과 지급제한

제145조제2항에 제2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3. 법 제77조의2와 법 제77조의5제1항에 따른 예술인인 피보험자의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의 수리 등

제145조의2제1항에 제19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9의2. 법 제77조의2와 법 제77조의5제1항에 따른 예술인인 피보험자의 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 등의 신고에 관한 사무

제145조의2제2항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법 제77조의3과 법 제77조의5 제2항·제3항에 따른 구직급여와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과 지급제한 등에 관한 사무

별표3의 제2호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영은 2020.12.10.부터 시행한다.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46조 관련)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15조(제77조의5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1)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 2)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118조 제1항제1호	피보험자 1명당 3만원. 다만, 과태료 금액의 합산액은 1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피보험자 1명당 5만원. 다만, 과태료 금액의 합산액은 1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피보험자 1명당 3만원. 다만, 과태료 금액의 합산액은 1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피보험자 1명당 8만원. 다만, 과태료 금액의 합산액은 2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피보험자 1명당 3만원. 다만, 과태료 금액의 합산액은 1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피보험자 1명당 10만원. 다만, 과태료 금액의 합산액은 3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나. 법 제42조제3항 후단(제77조의5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여 주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발급하여 준 경우 1)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여 주지 않은 경우 2) 거짓으로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 준 경우	법 제118조 제1항제2호	10만원 100만원	20만원 200만원	30만원 300만원
다. 법 제43조제4항 후단(제77조의5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1)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	법 제118조 제1항제3호	10만원	20만원	30만원

우 2) 거짓으로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라. 법 제87조(제77조의5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심사 또는 재심사의 청구를 받아 하는 심사관 및 심사위원회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진술한 경우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법 제118조 제3항	50만원	50만원	50만원
마. 법 제108조제1항(제77조의5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요구에 불응하여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같은 요구에 불응하여 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적은 문서를 제출한 경우 또는 출석하지 않은 경우	법 제118조 제1항제4호	200만원	200만원	200만원
바. 법 제108조제2항(제77조의5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요구에 불응하여 증명서를 내주지 않은 경우	법 제118조 제1항제5호	200만원	200만원	200만원
사. 법 제108조제3항(제77조의5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요구된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적은 문서를 제출한 경우 또는 출석하지 않은 경우	법 제118조 제2항제1호	50만원	50만원	50만원
아. 사업주, 보험사무대행기관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법 제109조제1항(제77조의5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질문에 답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진술한 경우 또는 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법 제118조 제1항제6호	200만원	200만원	200만원
자. 피보험자, 수급자격자 또는 지급되지 않은 실업급여의 지급을 청구하는 자가 법 제109조제1항(제77조의5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질문에 답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진술한 경우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법 제118조 제2항제2호	50만원	50만원	50만원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u><신 설></u> <u><신 설></u>	<u>제5장의2 예술인인 피보험자에</u> <u>대한 고용보험 특례</u> <u>제104조의5(예술인의 적용범위 및</u> <u>피보험자격신고) ① 법 제77조</u> <u>의2제1항에서 정하는 “대통령</u> <u>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u> <u>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u> <u>다.</u> <u>1. 「예술인복지법」 제2조제2</u> <u>호에 따른 예술인</u> <u>2. 「예술인복지법」 제2조제2</u> <u>호에 따른 예술인이 아니면서,</u> <u>문화예술분야에서 창작, 실연</u> <u>(實演),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u> <u>하고 있거나 하려는 사람</u> <u>② 법 제77조의2제2항제2호에</u> <u>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u> <u>기준”이란, 제1항의 예술인(이</u> <u>하 “예술인”이라 한다)과 사업</u> <u>주가 체결한 각 문화예술용역</u> <u>관련 계약(법 제77조의2제1항에</u> <u>따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u> <u>말한다. 이하 같다)을 기준으로</u> <u>해당 소득 금액을 계약 기간으</u>

로 나눈 월(月) 금액(이하 ‘월평균소득’이라 한다)이 50만원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다만, 각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의 월평균소득은 50만원 미만이나 같은 계약기간 내에 둘 이상의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예술인이 각 계약의 월평균소득의 합산을 신청하고 합산한 금액이 50만원 이상인 경우 법 제 77조의2제2항제2호의 소득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③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의 상대방인 사업주는 법 제77조의 5제1항에 따라 준용하는 법 제15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그 사업과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예술인의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에 관한 사항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나 하수급인이 법 제77조의2제2항제2호 단서조항에 따른 단기예술인(이하 “단기예술인”이라 한다)과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

한 경우, 계약체결일이 해당하는 달에 문화예술용역 제공일 수, 계약금액 등이 적힌 노무제공내용 확인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달 15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을 신고하거나 이직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④ 제104조의5제2항단서에 따라 각 계약의 월평균소득의 합산을 신청하려는 예술인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⑤ 법 제77조의5제1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예술인이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 등에 관한 사항을 신고할 때에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서 등 계약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 법 제77조의2제3항에서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문화예술용역 계약을 발주하는 사업을 말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4항에 따라 피보험자격을 신고하여야 한다.

1. 하나의 사업에 다수의 도급이 이루어져 원수급인이 다수인 경우: 발주자인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원수급인 및 하수급인과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예술인을 신고하여야 한다.

2. 하나의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으로 이루어져 하수급인이 다수인 경우: 원수급인이 하수급인과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예술인을 신고하여야 한다.

⑦ 법 제77조의2제4항에 따라 하수급인인 사업주와 예술인 등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자료 및 정보를 제3항에 따라 피보험자격을 신고하는 발주자 또는 원

수급인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1. 하도급계약서(발주자가 신고하는 경우만 해당)

2.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서

3. 예술인명부

⑧ 법 제77조의2제5항에 따라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둘 이상의 사업에서 동시에 근로계약 또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예술인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1. 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한다)와 예술인으로 동시에 둘 이상의 사업에서 근로계약 및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경우 각 사업에서 모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일용 근로자 및 법 제77조의2제2항 제2호 단서에 따른 단기예술인(이하 “단기예술인”이라 한다)의 경우도 같다.

2. 예술인으로 둘 이상의 사업에서 동시에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각각 체결한 경

우 각 사업에서 모두 피보험
자격을 취득한다.

3. 예술인이 문화예술용역 관
련 계약 외에 근로자로 둘 이
상의 사업에 동시에 고용되는
경우 근로자로서 취득하는 피
보험자격은 법 제18조에 따른
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
라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람
이 「보험료징수법」 제49조의
2에 따른 자영업자로 피보험
자격을 동시에 취득한 경우
제1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피
보험자격만 취득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
하는 피보험자가 일용근로자
또는 단기예술인인 경우에는
해당 피보험자격과 자영업자
인 피보험자격 중 어느 하나
를 선택 할 수 있다.

⑨ 법 제15조제1항 및 제3항, 제
17조에 따라 피보험자격을 취
득한 예술인이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던 중 다음 각 호에 따
른 월평균보수의 산정 근거가

<신 설>

되는 소득이 제2항본문에 따
른 소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
게 된 경우에도 계속하여 피
보험자격을 유지한다.

1.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9
조의3제3항제1호에 따라 산정
한 월평균보수

2.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9
조의3제6항에 따라 변경된 월
평균보수

⑩ 예술인인 피보험자의 피보험
자격에 관하여는 제9조, 제10
조제1항, 제1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업주 또는 하수급
인”은 “사업주 또는 발주자나
원수급인”으로 한다.

제104조의6(예술인의 구직급여)

① 법 제77조의3제1항제3호에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소득감소로 인하여 이직”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이직
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보
수가 전년도 동일기간 보다 2
0% 이상 감소한 경우 또는 이
직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 12개
월 동안 전년도 월평균보수 보

다 20% 이상 감소한 달이 5개월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77조의3제2항에 따라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 근로자·예술인 중 둘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종사한 경우 피보험 단위기간은 법 제40조제1항제1호(이하 “근로자로서의 기여요건”이라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법 제77조의3제1항제1호(이하 “예술인으로서의 기여요건”이라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서 정하는 기준기간 중 근로자 또는 예술인으로 종사한 기간의 비율을 기준으로, 예술인으로서의 기여요건에서 부족한 피보험단위기간의 비율을 근로자의 기준기간 대비 피보험단위기간의 비율로 충족한 경우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③ 법 제77조의3제5항에 따라 구직급여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일액이 11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1만원을 해당 임금일액으로 한다.

④ 법 제77조의3제6항 단서에 따라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는 소득감소에 따른 이직의 대기기간은 4주로 한다.

⑤ 법 제77조의3제7항에 따른 단기예술인의 피보험기간은 해당 월의 노무제공일수가 11일 이상인 경우 1개월로 간주한다. 다만, 11일 미만으로 노무를 제공한 월에 대해서는 각 월별 노무제공일수를 합산하여 22일로 나눈 기간을 피보험단위기간으로 한다.

⑥ 법 제77조의3제8항에 따라 실업인정대상 기간 중 취업 등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구직급여일액을 일부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수급자격자가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취업한 것으로 보아 취업한 기간 동안 구직급여 일액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가. 1개월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

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
하는 경우

나.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
로를 제공하는 경우

다.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일
용근로자 또는 법 제77조
의2제2항제2호 단서에 따
른 단기예술인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라. 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
라 새로이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노
무를 제공하는 경우

마. 상업·농업 등 가업에 종사
(무급 가사 종사자를 포함
한다)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
고 인정되는 경우

바.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
을 한 경우(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
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
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사. 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
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
우

2. 제1호의 취업에 해당하지 않
지만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취
득한 소득이 고용노동부장관
이 고시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구직급여일액에서 초과
분을 감액하고 지급한다.

⑦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예술인
인 피보험자의 구직급여 지급
여부를 결정한 경우 그 청구인
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
만, 구직급여를 지급하기로 결
정한 경우에는 제62조에 따른
고용보험 수급자격증에 그 사실
을 적어 내줌으로써 통지를 갈
음할 수 있으며, 청구인의 동의
가 있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통지할 수 있다.

⑧ 예술인인 피보험자의 구직급

여에 관하여는 제59조부터 제63조까지, 제64조제1호·제2호 및 제65조부터 제67조까지, 제69조부터 제71조까지, 제75조부터 제77조까지, 제79조부터 제8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40조제2항제1호”는 “법 제77조의5제2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40조제2항제1호”로, “법 제42조”는 “법 제77조의5제2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42조”로, “법 제43조제1항”은 “법 제77조의5제2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43조제1항”으로, “법 제44조”는 “법 제77조의5제2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44조”로, “법 제47조”는 “법 제77조의5제2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47조”로, “법 제48조”는 “법 제77조의5제2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48조”로, “법 제57조”는 “법 제77조의5제2항에서 준용하는 제57조”로, “법 제60조”는 “법 제77조의5제2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60조”로, “법 제61조”는 “법 제77조의5제2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61조”로, “법 제6

<신 설>

3조”는 ”법 제77조의5제2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63조”로 한다.

제104조의7(예술인인 피보험자의
출산전후급여등 지급요건 등)
① 법 제77조의4제2항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은 예술인이 다
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출산전후급여등(이하
“출산전후급여등”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1. 출산 또는 유산·사산을 한
날(이하 “출산일 등”이라 한
다) 이전에 법 제77조의3제2
항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3개월 이상일 것

2. 출산일 등 전후로 노무제공
을 하지 않았을 것. 다만, 수급
기간 중 취업 또는 자영업을
통한 소득이 고용노동부 장관
이 고시하는 금액 미만인 경
우에도 지급한다.

3. 출산일 등의 다음 날부터 12
개월 이내에 신청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유
로 신청할 수 없었던 경우에
는 그 사유가 끝난 날부터 30

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가. 천재지변

나. 본인이나 배우자의 질병·

부상

다. 본인이나 배우자의 직계

존속 및 직계 비속의 질병

·부상

라. 범죄혐의로 인한 구속이

나 형의 집행

② 제1항에 따른 출산전후급여
등은 다음 각 호의 기간에 대하
여 출산일 등으로부터 이전 1년
간 월평균보수에 해당하는 금액
을 지급한다.

1. 예술인이 출산한 경우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
한 경우에 120일). 다만, 출산
일을 포함하여 출산 후에 45
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
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2. 예술인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간

가. 유산 또는 사산한 예술인

의 임신기간(이하 “임신기간”이라 한다)이 1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

나.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다.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라.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마.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③ 제2항에 따라 지급하는 출산전후급여등의 상한액 및 하한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가. 제101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의 상·하한액

나. 예술인의 평균 보수 수준

다. 물가상승률

라.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
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
법으로 출산전후급여등을 받았
거나 받으려 한 사람에게는 그
급여를 받은 날 또는 받으려 한
날부터의 출산전후급여등을 지
급하지 아니한다.

⑤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거짓이
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출
산전후급여등을 지급받은 사람
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받은 출산전후급
여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
을 명할 수 있다.

⑥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5항
에 따라 반환을 명하는 경우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출산전후급
여등 지급액의 2배 이하의 금액
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다
만, 제104조의5제4항에 따라 예
술인의 피보험자격을 신고하는

사업주와 공모(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사업주의 거짓된 신고·보고 또는 증명 등 사업주의 귀책사유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를 말한다)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출산전후급여등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지급받은 출산전후급여 등 지급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⑦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출산전후급여등을 지급받은 예술인이 제104조의5제4항에 따른 사업주와 공모한 경우에는 그 사업주도 그 출산전후급여등을 지급받은 사람과 연대하여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책임을 진다.

⑧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출산전후급여등의 수급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수급자격이 있었던 사람에게 잘못 지급된 출산전후급여등이 있으면 그 지급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⑨ 출산전후급여등의 반환 등에 관하여는 제81조를 준용한다.

<신 설>

제104조의5 (생 략)

제145조(권한의 위임 등) ① 법 제

이때 “구직급여”는 “출산전후급
여등”으로 한다.

제104조의8(준용) 예술인의 구직
급여·출산전후급여등에 관하여
는 제121조부터 제142조까지 및
제14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87조”는 “법 제77조의5제
3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87조”
로, “법 제89조”는 “법 제77조의
5제3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89
조”로, “법 제91조”는 “법 제77
조의5제3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
91조”로, “법 제92조”는 “법 제7
7조의5제3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92조”로, “법 제93조”는 “법
제77조의5제3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93조”로, “법 제94조”는
“법 제77조의5제3항에서 준용
하는 법 제94조”로, “법 제99조”
는 “법 제77조의5제3항에서 준
용하는 법 제99조”로, “법 제101
조”는 “법 제77조의5제3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101조”로 한다.

제104조의9 (현행 제104조의5와
같음)

제145조(권한의 위임 등) ① ----

115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한다.

1. ~ 3. 삭제

4. ~ 13. (생략)

<신설>

14. ~ 26. (생략)

② 법 제115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하 “근로복지공단”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1. ~ 2의2. (생략)

<신설>

3. ~ 12. (생략)

③ ~ ⑨ (생략)

제145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고용노동부장관(제145조에

-----.

4. ~ 13. (현행과 같음)

13의2. 법 제77조의3과 법 제77조의5 제2항·제3항에 따른 구직급여와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과 지급제한

14. ~ 26. (현행과 같음)

② -----

-----.

1. ~ 2의2. (현행과 같음)

2의3. 법 제77조의2와 법 제77조의5제1항에 따른 예술인인 피보험자의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의 수리 등

3. ~ 12. (현행과 같음)

③ ~ ⑨ (현행과 같음)

제145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
업무를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
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
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
를 처리할 수 있다.

1. ~ 19. (생략)

<신설>

20. ~ 25. (생략)

②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
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
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
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62조·제74조·제77조
에 따른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구직급여 등의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에 관한 사무

-----.

1. ~ 19. (현행과 같음)

19의2. 법 제77조의2와 법 제77
조의5제1항에 따른 예술인인
피보험자의 피보험자격의 취
득·상실 등의 신고에 관한 사
무

20. ~ 25. (현행과 같음)

② -----

-----.

1. -----

<u><신 설></u> ③ · ④ (생 략)	<u>12. 법 제77조의3과 법 제77조</u> <u>의5 제2항·제3항에 따른 구직</u> <u>급여와 출산전후급여등의 지</u> <u>급과 지급제한 등에 관한 사</u> <u>문</u> ③ · ④ (현행과 같음)
--	---

〈 의안 소관 부서명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	
연 락 처	(044) 202 - 7352